



SK(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자
정 만 원
SK(주) E&M 사업부부장

I. 머리말

1975년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공정거래제도가 일부 도입되고, 1980년 공정거래법의 제정 이래 공정거래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 등 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외화유동성 문제로 야기된 경제위기로 IMF체제를 거치면서 이제 공정경쟁은 세계화시대의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기업활동에 있어 공정경쟁의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이 되었으며, 기업은 공정경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생존의 능력을 구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2001년 업계, 학계, 법조계 주요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발족되고, 동 위원회가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2002년말 기준으로 CP 도입기업이 70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던 것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범 준

수 시스템을 작동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제도가 한 걸음 성숙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3월 26일 공정거래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자율준수 이행평가대회에서 9개의 기업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이행평가대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SK(주)는 자율준수 이행평가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나 이미 도입한 회사들이 CP를 운영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도록 SK(주)의 자율준수 운영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II. SK(주)의 CP 운영내용

1. SK(주)의 CP 정의 및 CP의 도입 경과

가. CP의 정의

SK(주)는 CP를 “기업경영활동 수행시 제반 공정거래 관련제도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대내적으로는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며 해당 시장의 공정거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시스템 및 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범위반사실 보도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은 손실을 입게 되며, 이러한 손실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SK(주)는 CP의 1차적 목표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에 두었다. 즉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 이미지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준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가 속한 시장의 공정거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CP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나. CP의 도입 경과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CP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이지만, SK(주)가 공정거래규범의 자율적 준수라는 의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95년부터이다. SK(주)는 '95년 정유업계 및 SK그룹 최초로 공정거래 준수 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 추진위원회 및 공정거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96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과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분야 공정거래준수 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분위기가 전사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1996년 11월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 '02년 CP의 전면 개편

CP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SK(주)는 공정위의 7대 핵심요소를 충족시키고 회사의 공정경쟁규범 준수의욕을 재고취하기 위해 '02년 CP의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CEO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재선언하였고, '02년 8월에는. 이사회에서 E&M사업부문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공시함과 동시에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및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사내의 공정거래 교육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현업의 공정거래 준수에 직접적인 참고가 되는 「자율준수편람」을 전면 개편하여 제작하였다.

2. SK(주) CP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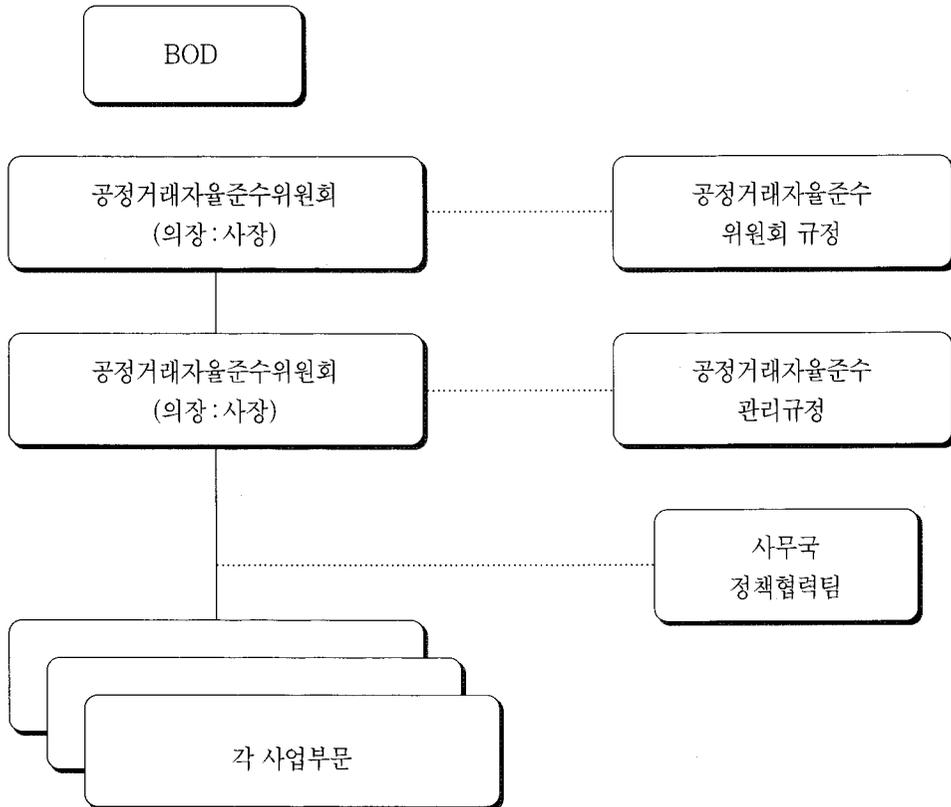
가. SK(주)의 CP 체계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⑤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CP의 7대 항목과 관련한 SK(주)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K(주) CP 주요내용】

항목	내용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표명	'96.7 공정거래준수 선언/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채택 '01.10 CE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방침 재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02. 7. 이사회 의결을 거쳐 E&M 사업부문장(전무)을 CCO로 선임 및 공시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96. 1. 자율준수편람 발행 '96. 9. 마케팅분야 공정거래준수지침서 발간 '02. 10. 자율준수편람 전면개정판 발간
자율준수교육	전임직원 대상 WBT(Web Based Training) 과정 운영 계층별 교육과정 운영(공정거래전문가 과정, 신입사원/판매원/대리점 정규교육 과정)
내부감독체계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의장 : 사장)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규정 자율준수전담조직 운영 : 정책협력팀내 공정거래그룹
임직원제재시스템	사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문서관리시스템	자율준수활동과 관련된 제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

【SK(주) CP 체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본사 각 사업부문의 부문장 및 사장실장, 법무팀장으로 구성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간사이다. 회사의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① 회사의 공정거래업무 추진방침 및 자율준수 활동계획, ② 자율준수 관리규정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에 관한 사항의 이사회 부의, ④ 공정거래업무 관련 부문(부서)간 중요 조정사항, ⑤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공정거래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규정

CP 운영관련 임직원의 준수의무사항과 자율준수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의무, 자율준수 실태점검 및 활동상황의 이사회 보고의무, 임직원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나. 공정거래 WBT 교육

회사가 공정경쟁규범을 실효성 있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공정거래 규범준수의식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은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었다. 현업에 바쁜 임직원들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단기의 교육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어, 당사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00년 공정거래 기초과정 WBT(Web Based Training)을 개발완료하고, '01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총 6기에 걸쳐 240여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 기초과정을 이수했다. 공정거래 사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사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사업 영업관련 부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은 필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하고 동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포함시켜 운영했다. 또한 구매, 기획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Staff 부서는 물론 신규사업 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정거래 기초과정을 익힌 직원들이 보다 심화된 공정경쟁규범을 학습할 수 있도록 상위 과정을 온라인 학습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 공정거래 Coordinator 제도

불공정행위의 사전차단을 위해 공정거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합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철저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기 곤란하다.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공정거래 전담팀의 공정거래 지식과 현업의 시

장관련 전문지식이 결합되고 공유된다면,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리하여 공정거래 사안 발생 가능한 팀의 부·과장급 직원을 공정거래 Coordinator로 선정하여 해당 팀의 공정거래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oordinator에 대하여는 정식 인사발령이 나며, 연간 1회 1박 2일의 합숙과정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공정거래 Coordinator는 해당 팀의 공정거래 준수 사항을 담당하고, 공정거래 사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전담팀과 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 Coordinator들은 당사가 지식경영 추진을 위해 개설한 CoP(Community Of Practice)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공정거래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수행한다.

3. CP 운영의 효과

CP 운영의 직접적인 효과는 우선 임직원의 공정경쟁규범의 인식과 준수의지가 확산되고 증가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CP를 통한 사전협의가 급속하게 증가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인 협의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99년 34건이던 것이 '01년 68건, '02년 106건에 달했고, 사전협의와 비례하여 공정위 직권조사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이 '99년 9건, '01년 4건에서 '02년에는 1건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공정거래 발생가능 사안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불공정행위 소지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공정경쟁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확산은 회사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단기적인 불공정한 이익은 결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회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경쟁규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향후 CP 운영방향 제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을 인정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운영실태에 따라 과징금, 신문공표 및 검찰고발의 법적 제재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우리 기업들에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운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CP의 실제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토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1)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CP의 실제적 작용에 관하여 기업의 시각과 공정위의 시각이 일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CP 평가기준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2) CP 인센티브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하며,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